×	- 7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וווח רבו	
임대인	주민	등록:	번호						전 호	화		성 명			- 서명 또는 - 날인(1)	
	CH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5		성 명				
	주		소											וום רבו		
암차인	주민	등록:	번호					전 호	화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CH	김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두	·소소)	IXII						사무소소자	HXI						
	사무소명칭							사무소명	칭							
	대 표		丑	표 서명 및 날인 @		(1)	CH	丑	서명 및 날인			(1)				
	旧	록 번	호			전화			등 록 번	호			전	화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u>(1)</u>	소속공인중	개사	서명 및 날인	<u> </u>			(1)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②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③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증액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계약성인 기월동시시													
임	성	명					임	성	명				
CH	주	소					차	주	소				
인	연 락	처					인	연	락 처				
임차목	적물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인()은 임차인()로부터년월일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위 임차인에게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요구	
계약갱신	l 기절	사유 (출	두택임대:	차보호법 제	6조의3 제1	항 각 호)							
계약생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상당한 보상의 내용: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貨)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貨)한 경우 □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7-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7-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실거주자 성명: , 임대인과의 관계: □본인 □ 직계존속 □ 직계비속)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위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충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정 *** 선택하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들을 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									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2	!대인 :			(서	l명 또는 날인)	
· 기저토	TIOI	등려이		F7U	=======================================	ᄲᄱᄡ	\ 	= OLT	וורווחוחו		ᆉᇬᇜᄱ	11 HYMSH ICL	